

고

시

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- 호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(안양명학, 행복주택)

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35조제1항에 따라 안양명학 공공주택건설(행복주택) 사업계획에 대하여 “경미한 사항” 변경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5월 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 업 명 : 안양명학 공공주택 건설사업(행복주택) (변경없음)

2. 사업시행자 (변경없음)

○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, 안양시 시장 최대호

○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,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

3. 사업개요

구 분	기 정	변 경	비 고
가. 대지위치	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287-2 외 1필지	좌 동	
나. 사업면적(m ²)	2,652.13m ²	좌 동	
다. 대지면적(m ²)	2,652.13m ²	좌 동	
라. 연 면 적(m ²)	6,129.19m ² (공동주택 1,004.28m ² / 근린생활시설 496.50m ² / 공영주차장 4,628.41)	6,122.88m ² (공동주택 997.97m ² / 좌동 / 좌동)	감6.31m ²
마. 사업규모	행복주택 1개동(연립주택 24세대, 지상1~4층), 지역자치센터(제1종 근린생활시설, 지상1~3층), 공영주차장(지하주차장, 1~2층)	좌 동	
바. 구 조	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	좌 동	
사. 사 업 비	15,283,508천원 (주택도시기금 1,259,016천원)	좌 동	
아. 사업기간	사업승인 고시일 ~ 2022. 05	좌 동	

4. 기 타 : 관계 도서는 안양시청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(02-6177-4578)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

※ 변경내역 : 경미한 사항 변경(단지 내 상가 면적 축소 등) 반영. 끝.